

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「부여군 군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부여군 군계획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15.

부 여 군



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문을 개정·정비하고 그 밖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·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대상 및 기준정비
 -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정비(안 제27조)
 -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정비(안 별표 24)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

-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(안 제53조)

※ 관련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5호

○ 재입법예고 사유 :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
대한 농업정책과 사전의견 반영

3. 의견 제출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(참조: 도시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1. 15. ~ 2023. 11. 27.

가. 제출사항
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2)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인터넷(부여군 홈페이지)

1) 전자우편(이메일): shiny1477@korea.kr

2) 주소: (우)3316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, 부여군청 도시건축과

3) 팩스: 041-830-2383

4) 인터넷(부여군 홈페이지): <http://www.buyeo.go.kr>

4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(041-830-23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부여군 군계획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**법 제22조의2**”를 “**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** (이하 “**법**”이라 한다) **제22조의2**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결정하여야 하며**”를 “**결정할 수 있으며**”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**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**”를 “**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**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**산정방식은 「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」**”을 “**산정방식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**”으로 한다.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**이격하여야 한다**”를 “**이격할 것**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k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,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.

제2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 및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6호 중 “설치하여야 한다”를 각각 “설치할 것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저감대책기준에 맞게 일체형개거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고,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침사지를 적극 검토·설치할 것

제2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9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태양광 발전시설은 제27조제1호·제2호·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”를 “발전시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9호(중전의 제7호)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일반건축물: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,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: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,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. 다만, 음영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다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

제27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발전시설 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권고 가능

제2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9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는 경우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”을 “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3호가목 중 “(별표 20”을 “(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(별표 19”를 “(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별표 19”로 한다.

제48조제1호가목 중 “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을 “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존 건축물로서”를 “건축물로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

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부채납하는”을 “기부채납하는”으로, “아래 각 호에 한정하고 용적율은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용적율은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.

제55조제5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대해서는 「부여군 군계획 조례」 제55조”를 “대해서는 이 조례 제55조”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“영 제30조제2호에 따라”를 “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 중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2항제3호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”를 “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”로, “같은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2항 중 “출석(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조례 제6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)”을 “출석”으로 한다.

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정문화재, 국가등록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전 이 조례 제53조제2호의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.

소 관 부 서		도시건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성 명	도시건축과장 이 상 석
	팀 장 직 위 성 명	도시계획팀장 김 영 일
	담 당 자 전 화 번 호	이 현 진 041-830-2383

개발행위허가의 기준 (제19조 관련)

1.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	
자원순환관련시설	<p>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및 나목 고물상</p> <p>나. 왕겨, 쌀겨, 밤껍질, 버섯류, 식용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, 퇴비, 사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</p>

2.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				
특정시설물 및 공작물의 종류	주거밀집지역 ¹⁾ (10호 이상)	도로 ²⁾ 와 지방2급하천 (예정지역 포함)	관광지 ³⁾ , 학교 ⁴⁾ , 공중이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⁵⁾ 및 장소 등	비 고
자원순환관련시설	신청부지경계 반경 1,000m 이상	신청부지경계 반경 1,000m 이상	신청부지경계 반경 1,000m 이상	

- 1) “주거밀집지역”이란 10호 이상의 주택(“주택”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,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. 이하 같다)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.
 ※ 주거밀집지역 주택“호”의 산정방법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,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는 제외하고,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.
- 2) “도로”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「도로법」 제10조제(도로의 종류와 등급)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,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이고, 시도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말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을 말한다.
- 3) “관광지”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, 부지경계를 말한다.
- 4) “학교”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를 말하며, 부지경계를 말한다.
- 5) “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”란 주민자치센터, 관공서, 마을회관 등을 말하며, 부지경계를 말한다.
- 6) 부여군 및 부여군 소재의 농협, 축협, 낙협, 인삼농협, 부여군산림조합에서 설치·추진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이격거리 등의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.

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
생략할 수 있다.

1.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
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
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
호까지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

2. ~ 7. (생략)

제19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
(생략)

② 입목축적·경사도 및 표고
산정방식은 「산지전용 허가기
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
규정」에 따른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7조(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
기준) 태양광 등 발전 시설(이
하“발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위한
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에 따
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
여야 한다.(단, 자가소비용 목적
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
다.)

1. (생략)

2.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
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
직선거리 1,000미터 이상, 5호

-----.

1. -----

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
호에 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산정방식은 「산지관리법 시행
규칙」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
기준) 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상 울타리(웬스 또는 수목 등)
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7.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개발
행위허가(협의) 대상 태양광
발전시설은 제27조제1호·제2
호·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
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 설치할 것

7.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
로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
저감대책기준에 맞게 일체형
개거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
설치하고, 재해발생예방을 위
해 침사지를 적극 검토·설치
할 것

9. -----
----- 발전시
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규정을 적용할 것. 다만, 다음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일반건축물: 신청일을 기
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
주소를 두고, 해당 건축물
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
식물 관련 시설: 신청일을
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
에 주소를 두고, 건축물대
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
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

<신 설>

8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. 다만, 음영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다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

8. 발전시설 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권고 가능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9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
식점·제과점은 제외한다)

나. (생략)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(별표 1 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)

라. (생략)

제48조(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)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(해당 지구의 토지이용,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.

1. 계획관리지역: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

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-----
-----(이 조례 제33조제19호에 따른 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) -----

1. -----

가.-----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-----

설의 설치 허가·신고 대상이 아닐 것

나.·다. (생략)

2. (생략)

제53조(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)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1. (생략)

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

3. (생략)

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③ (생략)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회복지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

3.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
기부채납하는 -----

시설은 아래 각 호에 한정하고 용적율은 균계획 조례로 정하는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1. 2. (생략)

⑤ 영 제85조제3항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)에 대해서는 「부여군 균계획 조례」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.

가. ~ 마. (생략)

제58조(공지의 설치·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) ① (생략)

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

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용적율은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대해서는 이 조례 제55조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공지의 설치·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

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높은
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
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제59조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
례) ① (생략)

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
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
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
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
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
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
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
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
거나 낮은 경우.

제66조(회의 운영) ① (생략)

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
위원 과반수의 출석(출석위원의
과반수는 조례 제64조제3항제3
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
어야 한다)으로 개의하고, 출석

중-----

-----.

제59조(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
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
호-----

----- 같은법 -----

제66조(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----- 출석 -----
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~ ⑤ (생략)

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